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6.

발 의 자 : 김종민·박희승·천하람
최혁진·이성윤·한창민
강준현·권향엽·박균택
허성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는 국가의 산업전환, 에너지 구조 개편,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·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.

기후위기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,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목표와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음.

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·변경 시 정부가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,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국민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,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요청 시

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, 투명성, 사회적 수용성을
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4항 및 제6항).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본문 중 “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”를 “재검토하고”로, “이를 변경하거나”를 “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새로 설정할 수 있다”를 “새로 설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6항 중 “노력하여야 한다”를 “노력하여야 하며, 공청회 외에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, 숙의형 공론조사, 지역주민 토론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수렴된 의견은 감축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며, 국회에 감축목표 및 감축수단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을 때 그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) ① ~ ③ (생략)	제8조(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정부는 「파리협정」(이하 “협정”이라 한다)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,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(이하 “중장기감축목표등”이라 한다)를 5년마다 <u>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사회적·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<u>새로 설정할 수 있다.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검토하고</u> ----- ----- <u>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새로 설정할 수 있으며,</u> <u>이 경우에도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·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	⑥ ----- ----- -----

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 <후단 신설> ⑦ (생략)	----- -----<u>노력</u> <u>하여야 하며, 공청회 외에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, 숙의형 공론조사, 지역주민 토론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수렴된 의견은 감축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며, 국회에 감축목표 및 감축수단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을 때 그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⑦ (현행과 같음)
--	--